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제10조 (계약 기간)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을 문서로 2부 작성하여 “수급자”와 “센터”가 각 1부씩 보관하되 계약 기간은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이하 “보호자”)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등급(이하 “등급”)의 변동, 계약 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아래와 같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약당사자, 계약 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및 비급여 대상, 대상별 비용, 계약의 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등등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시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1. 월이용료

-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1항 6호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자료 참조)

- ① 방문요양 1회당 이요시간별 급여비용 (이하 2025년 1.1기준)

-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1항 6호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자료 참조)

① 방문 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이하 2023년 1.1 기준)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30분	15,430	2,315	16,190	2,429
60분	22,380	3,357	23,480	3,522
90분	30,170	4,526	31,650	4,748
120분	38,390	5,759	40,280	6,042
150분	44,770	6,716	46,970	7,046
180분	50,400	7,560	52,880	7,932
210분	56,170	8,426	58,930	8,840
240분	61,950	9,293	65,000	9,750

②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 : 원)

구분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8,580	11,787	82,160	12,324
차량이용(가정 내)	70,850	10,628	74,070	11,111
차량 미 이용	44,240	6,636	46,250	6,938

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3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2년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증가액	212,300	203,200	66,400	61,300	52,600	27,000

제1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1)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2)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책임이행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 1)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무리한 안마 요구, 계단 청소 등), 할인 및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중절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초래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 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다 온 재 가 복 지 센 터